

이사회규정


Version 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ECO LAB

목 차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 범위).....	4
제3조 (구성 및 권한).....	4
제3조의2 (사외이사의 권한).....	4
제3조의3 (경영기본이념의 실행).....	5
제2장 회의	5
제4조 (성립).....	5
제5조 (이사회).....	5
제6조 (의장).....	6
제7조 (소집).....	6
제8조 (소집청구).....	6
제9조 (소집통지).....	6
제10조 (감사의 보고).....	7
제3장 관장업무	7
제11조 (부의사항).....	7
제11조의2 (내부거래등의 승인).....	10
제11조의3 (이사회 내 위원회).....	11
제12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2
제13조 (위임사항).....	12
제14조 (보고사항).....	13
제14조의2 (관계인의 출석).....	13
제15조 (사후승인).....	13
제4장 결의	14
제16조 (의결방법).....	14
제17조 (의결권).....	14
제18조 (의결권의 제한).....	14
제5장 기타	15
제19조 (의사록).....	15
제20조 (의사록 등의 보존, 열람 및 발급).....	15
제21조 (간사).....	15
부칙	16

	<h1>이사회규정</h1>	
	Document#: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4.0	Issue Date: 2024/1/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사회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및 권한)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3 조의 2 (사외이사의 권한)

- ①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 ②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임원에게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h1>이사회규정</h1>	
	Document#: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4.0	Issue Date: 2024/1/24

제 3 조의 3 (경영철학의 실행)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 ④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제2장 회의

제4조 (성립)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한다.

제5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1. 제8조 제2항의 소집청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h1 style="margin: 0;">이사회규정</h1>	
	Document#: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4.0	Issue Date: 2024/1/24

제6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8조 (소집청구)

- ①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 ② 소집권자를 제외한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소집권자는 이를 거부 또는 보류(保留)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 소집청구는 이사회 소집일 2주일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소집통지)

- ①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간사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며,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② 본 조 제1항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③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본 조 제1항에 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장업무

제11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정관의 변경

라.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마.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바. 이사의 보수한도의 결정

사. 자본의 감소

아.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회사의 계속

자.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중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경영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해약

(3) 회사의 타회사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
의 양수

차. 액면미달의 주식발행

카. 주식의 병합

타. 주식의 분할

파.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나.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다.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라. 이사회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마.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의 2% 이상의 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 연구개발투자

사. 이 규정 제 3 조의 3 에서 정한 경영철학의 실행을 위한 실천방법의

개발 및 수정

아.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후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회 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차. 기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결정 및 변경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회사채발행

라.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마.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의 2% 이상의 다음의 채무부담, 자산취득 및 처분

(1) 1년을 초과하는 신규자금의 차입

(2)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3) 타법인 출자 및 대여

(4) 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인력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 나.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를 주재할 이사의 결정
 - 다. 이사회 의장의 선임
 - 라. 이사 경업의 승인
 - 마. 상법 제 398 조에서 규정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 바.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
 - 아. 상법 제 397 조의 2 에서 규정한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등 이용에 관한 승인
 - 자.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 및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 차. 준법지원인의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의 2 (내부거래 등의 승인)

- ① 다음 각호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에 승인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

2. 상법에서 이사회에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②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의 3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기타 필요 시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h1>이사회규정</h1>	
	Document#: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4.0	Issue Date: 2024/1/24

- ③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사항)

다음 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1조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회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 사항
3.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

제14조 (보고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보고를 받는다.

1. 이사회 결정 및 승인사항의 집행 경과와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3. 연간 사업계획 및 수정
4. 각 부서의 중요업무 사항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6.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4 조의 2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승인)

- ①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때부터 대내적인 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장 결의

	<h1>이사회규정</h1>	
	Document#: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4.0	Issue Date: 2024/1/24

제16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제11조 제4호 마목, 아목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함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의결권)

-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 (의결권의 제한)

- ①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기타

	<h1>이사회규정</h1>	
	Document#: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4.0	Issue Date: 2024/1/24

제19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에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록 등의 보존, 열람 및 발급)

- ① 이사회 의사록, 부의원안 등은 사무국에서 보존한다.
- ②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및 발급은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사회 소집통지 등 이사회 개최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업무 및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한 사무국 업무 등을 총괄한다.

	<h1>이사회규정</h1>	
	Document#: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4.0	Issue Date: 2024/1/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 월 11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 <2020.10.29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자기자본의 기준)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의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3.03.27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4.01.24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